

1. 개정이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7331호, 2020. 5. 26. 공포, 2021. 3. 1. 시행)함에 따라, 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 운영에 필요한 지급절차 및 명예감시원, 신고포상금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법률 제명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제명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안 제2조~제20조)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신청자격, 지급요건 등을 공고토록 하고, 사업 신청서 작성을 위해 5명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지급 대상 선정 시 약정신청서를 제출토록하고, 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등의 지급요건을 마련함.

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직불금을 수급하려는 어업인은 읍·면·동장에게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지급액 산출방법, 약정 포함사항 등을 마련함.

3)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직불금을 수급하려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방안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수산자원보호 효과 등의 조사·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친환경수산물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과 지급횟수를 정하고, 직불금을 수급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며, 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서를 제출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토록 함.

다.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4조)

직불금 수급을 위해 받아야 하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에서 직불금 수급을 위해 보관·비치토록한 서류의 종류를 정함.

라.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을 미지급하

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어업경영체 정보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의 일부만 지급토록 정함.

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직불금 지급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지급한 직불금과 수령금액 등을 공개토록 함.

바. 명예감시원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9조~제30조)

이·통장,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직원 등으로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홍보 및 위반행위 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액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기획재정부와 '21년 예산 협의 중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① 읍·면·동장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건불리지

역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의 조건불리지역
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자격 및 시기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방법·시기 및 지급액
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환수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관련 벌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읍·면·동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이하 이 조에서 “어촌계”라 한다)의 어촌계장[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장·이장(「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경우에는 행정동장·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된다. 다만, 어촌계장 본인이 위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촌계[어촌계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리(「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포함한다)] 단위로 법 제8조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어업인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이하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읍·면·동장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통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결과를 읍·면·동장 및 운영위원회에 알리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명칭 및 위원장의
성명

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자격 및 시기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시 제출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
상 어촌마을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다.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신청서의 제출) ① 법 제10조
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제5조제2항
제2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정하여 통보한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금 신청 시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신청서(이하 “약정 신청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 신청서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인이 첨부하려는 서류
중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
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약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위원회는 약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면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약정 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인지를 확인한 후 약정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협약안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리협약안의 내용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협약의 효율적인 체결을 위하여 관리협약 모델을 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등과 운영위원회에 관리협약 모델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점검하여야 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일까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2. 운영위원회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이하 “어촌마을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②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제외한다)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을 약정한 어업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계좌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 입금되면 해당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 ③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관리협약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제9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법 제15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서”라

한다)에 법 제14조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9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장은 해당 지급대상자가 법 제14조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급대상자가 소속된 어촌계에 결산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급액에 별표 1의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약정(이하 이 절에서 “약정”이라 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약정 체결 전 지급대상자가 속한 어촌계명
3. 지급액 및 지급기간
4. 지급대상자 준수사항
5. 약정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 해제
2. 약정의 상대방이 탈퇴 전에 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한 경우 : 해제
3.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 해지
4. 그 밖에 약정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환수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3조에 따라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약정을 해제한 경우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에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
 2. 약정을 해지한 경우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을 중단하고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환수
-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중단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제15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설정·할당된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할 것
 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척시행계획의 감척목표 달성에 협조할 것
 3.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의무의 세부기준, 이행방법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 ① 영 제7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서”라 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수산자원보호 효과 등의 조사·분석(이하 ‘적합성검토’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절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제18조(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종류) 법 제18조제2항의

준수의무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을 받고 「해양수산물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가목의 따른 유기수산물을 생산할 것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 등의 인증을 받고 「해양수산물 소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의 무항생제수산물 등을 생산할 것
3.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사용의 제한 및 금지를 준수할 것

제19조(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무항생제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유기수산물·무항생제 직불금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물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②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합사료 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배합사료 직불금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20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사후관리

제21조(교육시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2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을 통해 전산자료로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기관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전산자료로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 서식,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제24조(서류의 범위 및 보관 등) ① 법 제20조제6항에서 관련된 서류란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변경등록 확인서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어구·양식 사료 등 어업자재의 구매서류, 종자 등의 구매서류, 교육 이수증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 및 준수사항 관련 서류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지급제한 및 선정제한 기준) 법 제13조제3항 및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해양수산부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면·동(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법 제13조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을 완료한 날
2.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 법 제16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을 완료한 날
3.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 영 제8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을 완료한 날
4.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 영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이·통장 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 등에 관한 지도·홍보 및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신고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에 따른 미지급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조사·수사 중인 경우
4.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 우수사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등의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수령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수산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연령별 지급기간(제12조제1항 관련)

1. 지급기간

연 령	지 급 기 간
만 65세	10년
만 66세	9년
만 67세	8년
만 68세	7년
만 69세	6년
만 70세	5년
만 71세	4년
만 72세	3년
만 73세	2년
만 74세	1년

2. 지급기간의 계산 방법

가. 지급기간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한다.

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한다.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제3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당해연도 지급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횟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 기준(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지급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한 경우			
가) 법 제8조에 따른 조건불리 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나) 법 제15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다) 영 제7조에 따른 수산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1년

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미지급	
라) 영 제10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가) 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나) 법 제16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다) 영 제8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라) 영 제11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다. 법 제8조 및 제14조의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및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각각 미지급	-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미지급	-
2) 운영위원회가 법 제13조제3		1차 2차 3차	-

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 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경고	공동기 금중단	3년 간 공동기 금중단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원 보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1)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할당 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미지급			-
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제10조에 따른 연근해 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의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에 협 조하지 않은 경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미지급			-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준 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미지급			-
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1)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 불금 미지급			-
2)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 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관리 를 위한 사료사용의 제한 및 금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 불금 미지급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친환경어업을 위한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 불금 미지급			-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공익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아. 법 제19조제2호 및 영 별표 2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별표 2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공익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자. 법 제19조제3호 및 영 별표3 제1호 각 목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공익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카.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별표 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제재부가금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와 직접 관련된 공익직접지불금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가목 또는 나목의 구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위반 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00%

2. 부과권자는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① 대상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행정동·리)								
② 지역현황									
인구 및 가구수	인구(명)						가구수(호)		
	계		남자		여자		계	어가	비어가
	어가	비어가	어가	비어가	어가	비어가			
연령별 인구 (명)	구분	계		0 ~14세		15 ~64세		65세 이상	
	남자								
	여자								
	계								
③ 어촌마을 공동체 활동현황									
조직명	조직구성	모임횟수		등록일시		주요활동내용		비고	
어촌계	()명	()회/월							
자율관리									
그 외									
④ 마을 발전 계획									
발전목표 설정	※ 친환경어업마을, 전통문화마을, 어촌관광마을 등 자체개발하여 작성합니다.								
발전목표 설정 이유	※ 어촌마을 내 지역특화 자원과의 연계성, 시·군 발전계획, 어촌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 등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향후 5년간 추진계획	※ 발전목표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및 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품목 개발, 친환경어업육성 노력, 마을 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노력,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작성합니다.								
어촌마을기금 활용 계획	※ 어촌마을기금이 조성될 경우 투자계획을 작성합니다.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 발전계획 이행 시 운영위원회 활동 계획(회의 개최 등)을 상세히 서술합니다.								

20 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신청서

제2쪽 및 제3쪽의 작성방법, 제출서류 등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5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번호	
	직불금 수령계좌(개인) 계좌번호 : (은행명 : , 예금주 :)			
②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③ 가구원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④ 어업 형태	어업종류	[]면허(면허번호:) []허가(허가번호:) []신고(신고번호:)	어촌계 등록 여부	[]예 []아니요
직접지불금 자격요건	⑤ 어업실적	[]연간 수산물 판매액(천원) []연간 조업일수(일)		
	⑥ 어업실적 확인실적	[]직접제출 []읍·면·동에서 확인(확인할 자료:)		
	⑦ 휴업신고	어업종류 : 휴업기간 : 20 . . . ~ 20 . . . 까지		
	⑧ 기타요건	⑧-1. 신청인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 가입자(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종사자는 제외)입니까?		[]예 []아니요
		⑧-3.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 표준 중 최상위 과세표준을 적용받았습니까?		[]예 []아니요
		⑧-4.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았습니까?		[]예 []아니요
		⑧-5. 신청인 본인이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 통보일 이후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 신청 ☐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경영주)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및 공동경영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부적격 사유*	확 인 란*	
	⑩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⑪ 읍·면·동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 제출서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예 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협위판증명서, 거래명세서, 어촌계 사(私)매매 장부,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출항신고서, 어촌계 조업일지,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등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 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어업허가·면허·신고정보, 수산물 위판정보, 어선의 입·출항정보 등의 어업실적정보 3. 종합소득세 납부정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정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금융계좌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경영주)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또는 공동경영주)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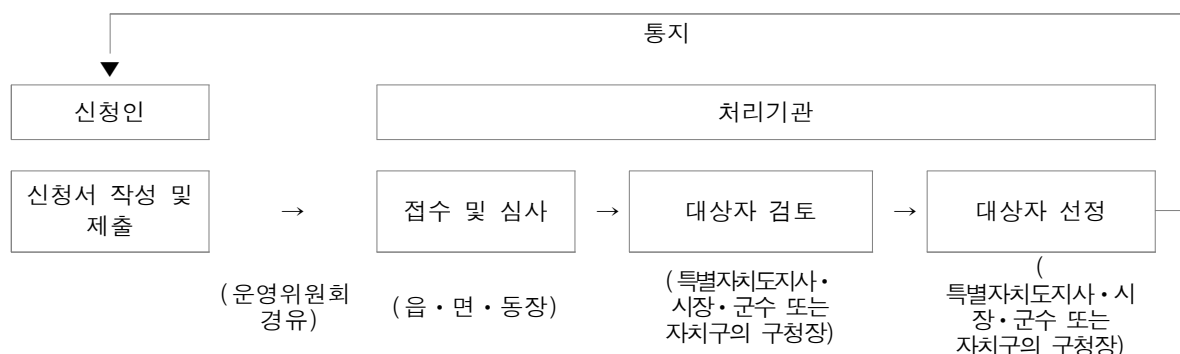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 표시된 부적격 사유란과 확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①・②란은 조건불리지역에서 실제 어업경영을 하는 신청인과 배우자(공동경영주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적되,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③란은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가구원은 제외하되, 직접지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미성년 가구원과 직접지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미성년 가구원의 인적사항은 적습니다.
- ④란은 신청인이 받은 어업의 종류에 √ 표시를 한 후 ()안에 면허・허가・신고번호를 적고, 어촌계에 등록(가입)하였으면 ‘예’, 등록하지 않았으면 ‘아니요’에 √ 표시를 합니다.
- ⑤란은 어업실적이 있는 해당 란에 √ 표시를 한 후 ()안에 연간 수산물 판매액 또는 연간 조업일수를 적되, 증명서류 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수산물 판매액과 조업일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을 충족하면 다른 하나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⑥란은 ⑤란에 적은 수산물 판매액 또는 조업일수의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직접제출’에 √ 표시를 하고, 공익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확인’에 √ 표시를 한 후 ()안에 확인할 자료(예시: 어업인 확인서, 수협위판실적, 입・출항실적, 어장관리실태조사서, 휴업신고서 등)를 적습니다.
- ⑦란은 「수산업법」 제30조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 휴업신고를 한 어업의 종류와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 ⑧-1란은 신청인 본인이 약정신청서 제출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이면 ‘예’,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아니요’에 √ 표시를 합니다.
단, 직장가입자 중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또는 어업회사법인 종사자는 반드시 ‘아니요’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⑧-2란은 ①부터 ③까지에 따른 신청인, 배우자 및 가구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에, 없는 경우에는 ‘아니요’에 √ 표시를 합니다.
- ⑧-3란은 ①부터 ③까지에 따른 신청인, 배우자 및 가구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에, 없는 경우에는 ‘아니요’에 √ 표시를 합니다.
- ⑧-5란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이 신청서 제출일 현재까지 신청인 본인이 조건불리지역에서 계속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있으면 ‘예’에, 아니면 ‘아니요’에 √ 표시를 합니다.
- ⑨란은 직접지불금을 받을 은행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⑩란은 어업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기재내용 누락 여부, 신청인, 배우자 및 가구원의 서명 여부, 첨부서류 완비 여부 등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확인결과 ‘부적격’인 경우에는 서명・날인한 아래의 여백에 ‘부적격’으로 적고 왼쪽의 부적격 사유란에 그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 ⑪란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이 신청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첨부서류, 공익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확인 결과 ‘부적격’인 경우에는 서명・날인한 아래의 여백에 ‘부적격’으로 적고 왼쪽의 부적격 사유란에 그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1. ⑤란의 어업실적이 없거나, 어업실적이 있더라도 일정 조건(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 증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⑧-1란부터 ⑧-3란까지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하는 경우
3. ⑧-4란이 ‘아니요’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수집·이용·제공·조회하도록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경영주)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또는 공동경영주)	(서명 또는 인)
(가무원)	(서명 또는 인)
(가무원)	(서명 또는 인)
(가무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 · 중복지원 방지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어업인) · 배우자의 성명, 가구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주소 ·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물 유통정보(판매액), 선박 입 · 출항 정보(조업일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 · 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가입정보(가입여부 및 형태),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용받은 과세표준 정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 수집 · 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사후관리기간 포함)

2.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부정 · 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 · 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어업인) · 배우자 및 가구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물 유통정보(판매액), 선박 입출항정보(조업일수) ■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표 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 · 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가입정보(가입여부 및 형태),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용받은 과세표준 정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 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 · 이용)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 대상 ☐ 대상 변경 **확인서**

1. 신청 가구수 현황: 총 ○○가구(허가어업 ○가구, 면허어업 ○가구, 신고어업 ○가구)

2. 지급대상자(변경자) 가구주 명단: 총 ○명

연번	시·군·구	읍·면·동	어촌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어업종류	면허허가신고	수산물 판매실적						어업 종사실적				
								증명서류(단위: 만원)						증명서류(단위: 일)				
								계	위판실적	구매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기타	계	입출항신고서	조업일지	어장관리실태조사서	기타

3.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주 명단: 총 ○명

연번	시군구	읍면동	어촌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어업종류	제외사유

년 월 일

○○ 읍·면·동장

직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어촌계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구분	어촌계 소재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어촌계 계원 명부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3. 최근 3년간 어촌계 총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결산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수집·이용·제공·조회하도록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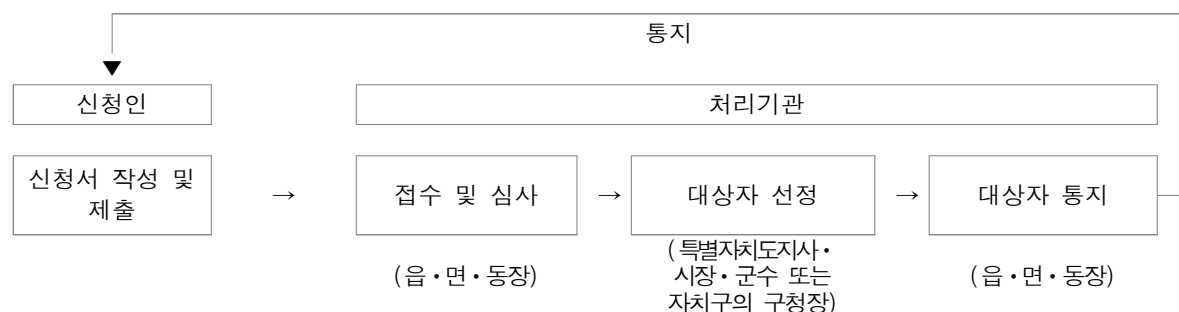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작성 방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어촌계 소재지”란에는 신청인이 속한 해당 어촌계 주소지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 · 중복지원 방지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또는 법인), 가구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 ·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촌계정보: 어촌계 소재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어촌계 결산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 · 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사후관리기간 포함)

2.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부정 · 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 · 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 가구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 ·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촌계정보: 어촌계 소재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어촌계 결산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 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 · 이용)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분	어촌계 소재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급약정 체결	약정체결 기한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장소	읍·면·동 사무소			
	준비할 사항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명)					법인명				
	주소 (법인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어업허가현황	구분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허가 기간		포획물·채취물		확인 서류	
	주어업								[] 직접 제출	
	그 외의 어업								[] 행정정보	
	그 외의 어업								공동이용 등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선질	[] 직접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지급요건 (준수의무)	기본의무	선택의무							확인 서류	
	총허용 어획량할당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선 감척	생분해성 어구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장치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기타		[] 직접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	[]	[]	[]	[]	[]	[]			
전년도 어업생산실적									확인 서류	
어획금액(원)				어획량(톤)					[] 직접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필수) 어업 허가증(면허증, 신고증) 사본 2. (필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3. (필수)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4. (필수) 어업생산실적 증빙자료(위판실적, 영수증 사본 등) 5. (필수) TAC 배분량 할당증명서(시범사업 할당증명서도 가능) 6. (선택)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계획서 7. (선택) 생분해성 어구사용 증빙자료(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보조금교부확정서) 8. (선택) 해양포유류혼획저감 장치부착 증빙자료(사진 사본 등) 9. (선택) 해양쓰레기 수거 계획서 10. (선택) 기타 준수의무 이행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해당 어업허가(면허, 신고) 처분권 소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 또는 자치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대상 여부 2. 어업허가·면허·신고 정보(인증정보와 일치여부 확인) 3.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 금융계좌 정보 4. 첨부해야 하는 서류 제출 여부	
근거 법조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등과 회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수집·이용·제공·조회하도록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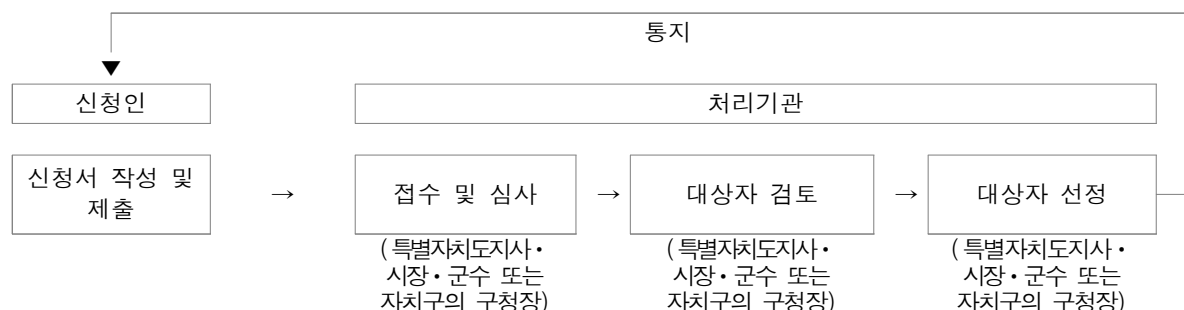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작성 방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
3. “어업허가현황”란에는 신청인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선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허가 받은 어업을 종류별로의 적습니다. 이때 포획물·채취물은 대표종 2~3종만 적습니다. 사용어선은 당해 허가 시에 등록된 모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선명), 총톤수, 마력, 선질 등을 모두 적습니다.
4. “어업허가현황”은 어업허가대장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5. “최근 3년간 참여 준수 의무 유형”은 신청년도를 포함한 지난 3년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별표 1]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지급요건 및 준수 의무” 참여 여부를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 “최근 3년간 어업생산실적”란에는 신청년도 이전 3년간의 연도별 당해 어업의 어획량과 어획금액을 적습니다. 이때 어획량은 어종을 불문하고 전체 어획량을 적습니다.
7. “입금계좌”란에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 · 중복지원 방지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또는 법인), 가구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 ·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 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 · 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사후관리기간 포함)

2.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부정 · 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 · 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또는 법인), 가구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 ·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 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 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 · 이용)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명)						법 인 명	
	주 소 (법인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어업허가 사항	어업허가정보	()어업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선정보	(어선번호:) (선명:) (총톤수: , 마력수:) (어선번호:) (선명:) (총톤수: , 마력수:) (어선번호:) (선명:) (총톤수: , 마력수:) (어선번호:) (선명:) (총톤수: , 마력수:) (어선번호:) (선명:) (총톤수: , 마력수:) (어선번호:) (선명:) (총톤수: , 마력수:)						
기본의무	선택의무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규제 강화에 따른 경영악화 인정	
총허용 어획량 할당	일시적/ 자율적 조업중단	어선 감척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해양쓰레기 수거	기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무항생제)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명)			양식장명 (법인명)						
	주 소 (법인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인 허가 현 황	어업종류	☐ 면허(면허번호:) ☐ 허가(허가번호:) ☐ 신고(신고번호:)			확인서류	☐ 직접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등록(등록번호:) ☐ 미등록 ☐ 그 외(「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서류	☐ 직접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HACCP 등록여부	☐ 등록(등록번호:) ☐ 미등록 ☐ HACCP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확인서류	☐ 직접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인 증 품 목	인 증 종 류	인 증 양식장 소재지 (해역의 경우 어장위치)				양식장 면적 (ha)	인 증 면적 (ha)	전년도 인 증 품 생 산 량 (톤/년)	전년도 인 증 품 생 산 금 액 (천원/년)	과거 지 급 현 황 (횟수)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지선)					
합 계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수산물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예 1. 「해양수산물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2. 어업면허·허가·신고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확인 필요 시 제출)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 기관	양식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 또는 자치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친환경수산물인증, HACCP 이행시설 등록 정보 2. 어업면허·허가·신고 정보(인증정보와 일치여부 확인) 3.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 금융계좌 정보	
근거 법조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등은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수집·이용·제공·조회하도록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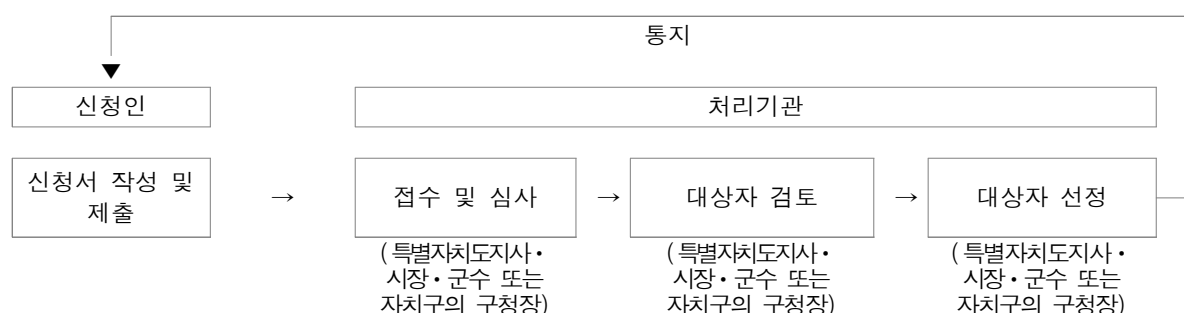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작성 방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
3. “어업종류”란에는 신청인이 인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에 √표시를 한 후 ()안에 면허·허가·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이때 면허·허가·신고번호는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비사용으로 인증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양식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4. “어업경영체 등록여부”란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등록한 경우 등록번호를 ()안에 적습니다.
5. “HACCP 등록여부”란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등록한 경우 등록번호를 ()안에 적습니다.
6.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비사용 중 하나를 적습니다.
7. “인증품목”란에는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비사용으로 인증받은 품목을 적습니다.
8. “양식장면적”란에는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비사용으로 인증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양식장의 면허·허가·신고 면적을 적습니다.
9. “인증면적”란에는 양식장의 면허·허가·신고 면적 중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비사용으로 인증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면적을 적습니다.
10. “전년도 인증품 생산량”란에는 품목별로 전년도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비사용으로 인증받은 품목의 생산량을 적습니다.
11. “전년도 인증품 생산금액”란에는 품목별로 전년도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비사용으로 인증받은 품목의 생산금액을 적습니다.
12. “과거지급현황”란에는 품목별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받은 횟수를 적습니다.
13. “입금계좌”란에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 · 중복지원 방지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또는 법인), 가구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 ·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친환경인증정보,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HACCP 이행시설 등록정보 ■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 · 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사후관리기간 포함)

2.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부정 · 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 · 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또는 법인), 가구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 ·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친환경인증정보,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HACCP 이행시설 등록정보 ■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 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 · 이용)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명)			양식장명 (법 인 명)			
	주 소 (법인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양식현황 * 확인서류 []직접제출 []행정정보공용 이용등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등록(등록번호:) []미등록 []그 외(「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양식품종	면허·허가 · 신고번호	양식장소재지(어장소재지)	양식장 인허가면적 (ha)	품종별 양식면적 (ha)	과거 지급 현황 (횟수)	
	합 계					-	
배 합 사 료 사 용 계 획	양식품종	연간 양식생산량(톤/년)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톤/년)		급이 예정 제품명		
	합 계				-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수산물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예 1. 어업면허·허가·신고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확인 필요 시 제출)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 기관	양식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 또는 자치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어업면허·허가·신고 정보 2.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배합사료 사용 및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3.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 금융계좌 정보	
근거 법조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 인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 구의 구청장에게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수집·이용·제공·조회하도록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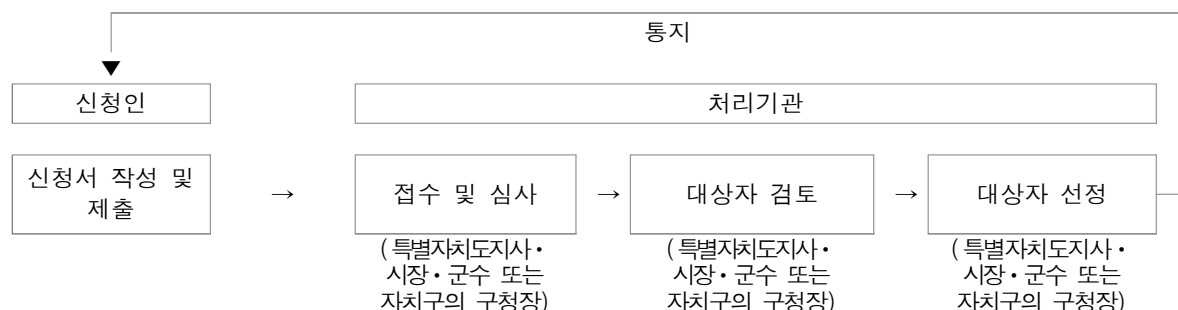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작성 방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
3. “양식현황”란 중 “어업경영체 등록여부”란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등록한 경우 등록번호를 ()안에 적고, 그 외 란에는 양식품종별로 신청인이 인허가 받은 면허·허가·신고 정보를 적습니다.
4. “배합사료사용계획”란에는 양식품종별로 연간 양식생산량 및 배합사료 급이계획, 급이 예정인 제품명(공급업체명 같이 기재)을 적습니다.
5. “입금계좌”란에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6. “변경내용”란은 변경신청 대상자만 작성하며, 변경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 · 중복지원 방지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또는 법인), 가구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 ·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배합사로 공급업체와 거래 정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 · 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사후관리기간 포함)

2.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부정 · 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 · 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또는 법인), 가구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 ·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배합사로 공급업체와 거래 정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 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 · 이용)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무항생제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명)					양식장명 (법인명)				
	주 소 (법인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인허가현황	어업정보	☐ 면허(면허번호:) ☐ 허가(허가번호:) ☐ 신고(신고번호:)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 등록(등록번호:) ☐ 그 외(「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HACCP 등록 정보	☐ 등록(등록번호:) ☐ HACCP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인증품목	인증종류	인증 양식장 소재지 (해역의 경우 어장위치)				양식장 면적 (ha)	인증 면적 (ha)	인증 생산량 (톤/년)	인증 생산금액 (천원/년)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지선)					
합 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수산물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조사공무원증

(앞쪽)

제 호

조사 공무원증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
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백상지 120g/㎡]

(색상: 연노란색)

(뒤쪽)

조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지·어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수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조사원증

(앞쪽)

제 호

조 사 원 증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
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백상지 120g/㎡]

(색상: 연녹색)

(뒤쪽)

조 사 원 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조사를 위하여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지·어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등을 출입할 때에는 이 조사원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공익직접지불금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구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첨부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